환경부			
보도자료			
□ '05. 5. 배포□ 사진 없음□ 총 쪽	김성동 과 장 이윤택 사무관	전화 (메일)	

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·억제 방지시설 일제젂검에 나서

- □ 환경부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고 있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의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존 오염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(Volatile Organic Compounds, VOCs)의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제품제조업 출하시설, 저유소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(STAGEI)에 대해서 5월4일부터 약 5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
 - ※ 대기환경규제지역: 수도권, 부산, 대구, 광양만권 등을 포함한 24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: 울산·온산 국가산업단지. 여수국가산업단지
 - ※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은 저유소 석유제품출하에서 주유소 저장시설까지를 STAGEI, 주유소 저장시설에서 차량으로 주유하는 과정까지를 STAGEII로 2단계로 구성
- □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악화 시키며, VOCs은 질소산화물(NOx)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 내 오존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이

그 자체로서도 **발암성**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여 1999년부터 석유정제 등 9개업종 29개 주요배출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배출·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.

- □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・수도권 및 광양만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정제업의 출하시설과 주유소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・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,
 - 금번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지역 주유소 3,047개,
 저유소 49개 각 석유제품 제조사 및 저유소 보유 하부적하방식탱크로리
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라고 하였다.
- □ 해당 시·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**시설점검 매뉴얼**을 바탕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게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회수·처리, 각 장비의 정전기 방지조치 등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다.
 - 이번 점검은 대상시설이 위험물 취급시설이고 최초로 도입 (Stage I) 규제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, **적발 위주보다 미비점** 을 **개선**하도록 권고하고, 운영시 문제점을 파악 관련규정을 보완 하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 StageⅡ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.
- □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위하여 주유소 주유기로부터 차량으로 주유하는 단계(STAGEII)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'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STAGEII 단계는 주유기에서 차량으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호스를 통하여 흡수 재생하는 시설을 말함

<참고자료> 1. 점검대상 주유소 현황

- 2. 점검대상 저유소 및 출하시설 현황
- 3. 규제대상 VOC 배출시설 및 규모

[붙임1]

점검대상 주유소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지 정 범 위	대상 주유소
계		3,047
서울특별시	전 역	721
인천광역시	강화군, 옹진군 제외 (옹진군 영흥면은 포함)	326
경 기 도	수원시, 부천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, 시흥시, 안산시, 과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성남시, 광명시, 하남시 (15개시)	878
부산권역	부산광역시 (기장군 제외), 김해시 (진영읍,장유,주촌, 진례,한림,생림,상동,대동면 제외)	453
대구권역	대구광역시	429
광양만권역	-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 화력발전소 부지 - 전라남도 광양시 (봉강, 옥룡, 진상, 다압면 제외) 순천시 (승주읍, 주암, 송광, 외서, 낙안, 별량, 상사, 황전, 월등면 제외) 여수시 (돌산읍, 화양, 남, 화정, 삼산면 제외)	218
울산광역시 (특별대책지역)	-울산·미포국가산단 -온산국가산단	22

[2]

		SK	GS		S-Oil		
		21	10	2	13	3	49
		4	-	-	-	-	4
		4	2	1	4	-	11
		4	-	-	-	-	4
()		9	-	-	8	-	17
		-	5	-	1	-	6
		-	3	1	-	3	7
		202	125	24	63	46	460
		142	83	14	59	46	344
		60	42	10	4	-	116
		21	13	10	19	3	66
VDU		17	10	8	15	2	52
VRU	VRU	4	3	2	4	1	14

⁾ VRU: Vapor Recovery Unit

[붙임3]

□ 규제대상 VOC 배출시설 및 규모

	배 출 시 설 종 류 및 규 모				
구분(업종)	시 설 명	배춭시설			
	1 = 0	규 모			
1.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	가.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나. 저장시설 다. 출하시설	모든 시설 저장용량 40㎡이상 모든 시설			
2. 저유소	가. 저장시설 나. 출하시설	저장용량 20m'이상 모든 시설			
3. 주유소	가. 저장시설	저장용량 20m'이상			
4. 세탁시설	가. 세탁시설	처리용량 30kg이상(합계)			
5.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	가. 반응시설 나. 혼합시설 다. 희석신나 제조시설 라. 유기용제,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마. 페인트저장시설	용적 3㎡이상 용적 3㎡이상 용적 5㎡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저장용량 10㎡이상 저장용량 50㎡이상			
	가. 세정시설(탈지시설 포함) 나. 유기용제,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	용적 1m'이상 저장용량 10m'이상 저장용량 10m'이상			
7. 자동차 제조업	가.유류,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	저장용량 10m'이상			
8. 기타 제조업	가. 세정시설(탈지시설 포함) 나. 유류,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	용적 1m'이상 저장용량 10m'이상			
별표에 의한 폐유,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)	가. 보관시설 나. 파쇄·분쇄·절단시설 다. 소각시설 라. 고온열분해시설 마. 건류시설 바. 용융시설 사. 증발·농축·반응시설 아. 정제시설	저장용량 10㎡이상(합계) 동력 20마력 이상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1일처리능력 5톤이상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동력 10마력 이상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1일 20킬로리터이상 (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, 기타 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)			
	자. 유수분리시설 차. 응집·침전시설 카. 건조시설	1일 처리능력 5톤이상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시간당 처리능력 0.15㎡이상			